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발행번호 HT21-00145		접수번호 HT21-00145	
확인 완료일 2021년 01월 04일		접수 연월일 2021년 01월 11일	
신청인	상호(명칭) 주식회사 큐브이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646-81-00163	
	성명(대표자) 홍성배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담당자 : 홍성배	전화번호 : (전자우편 : qvekorea@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원10길 23, 81호 (성수동1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확인 제품	제조·수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품목 탈취제
	제품명 QVE(큐브)		용도 밀폐공간용
	제형 고체형		중량·용량·매수 4g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

## 확인 결과

### · 검사방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2020.6.5)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70호, 2019.12.31)

· 환경조건 : 온도 (25 ± 5) °C, 습도 (50 ± 10) % R.H.

검사구분	판정	부적합 사항	비고	종합판정
화학물질 확인결과	적합	-	-	[O] 적합 [ ] 부적합
용기·포장 및 중량 확인결과	적합	-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결과	적합	-	-	

작성자 : 민수정 *ms*      기술책임자 : 조진범 *jm*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2월 01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유의 사항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위 판정은 신청인이 제시한 제품에 한정하여 확인된 결과입니다.





1. 화학물질 확인결과

연번	확인항목	단위	확인기준	확인결과	판정	비고
1	폼알데하이드	mg/kg	25 이하	8	적합	한량제한물질(함유)
2	메탄올	mg/kg	2 000 이하	불검출	적합	한량제한물질(함유)
3	이세트알데하이드	mg/kg	300 이하	6	적합	한량제한물질(함유)
4	글리옥살	mg/kg	70 이하	불검출	적합	한량제한물질(함유)
5	함유금지물질	-	비함유	비함유	적합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제출
6	한량제한물질(사용물질)	-	비사용	비사용	적합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제출

2. 용기·포장 및 중량 확인결과

연번	확인항목	확인기준	확인결과	판정	비고
1	겉모양	외관은 깨끗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부위가 없어야 한다.	이상없음	적합	
		구조는 변형·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한다.	이상없음	적합	
		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분사 후 흐름 현상이 없어야 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2	강도 및 누수	용기 강도 시험을 실시할 때 아개 또는 몸체 등 용기의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상없음	적합	
		누수 시험을 실시할 때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한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3	중량/용량/매수	허용부족량: 9% (3.64 g)	4.04 g	적합	
			4.60 g	적합	
			4.52 g	적합	

3. 어린이보호포장 확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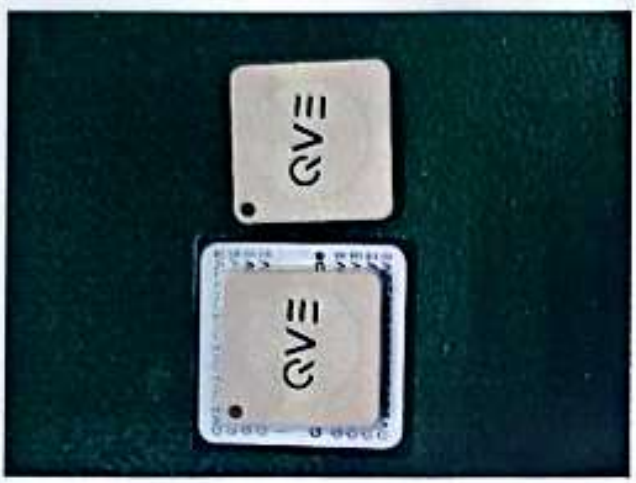
연번	확인항목	확인기준	확인결과	판정	비고
1	어린이보호포장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필수 품목기준)	해당없음	-	비대상
2	어린이보호포장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적용 물질기준)	해당없음	적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확인



4. 제품 사진

전면

후면



\* 위 제품은 다기능 제품(살균제, 탈취제)으로서 2021년 01월 04일에 발급된 확인결과서 살균제(HT20-03918)의 유효기간에 따라, 본 확인결과서의 유효기간은 2021년 01월 04일 ~ 2024년 01월 03일임

- 이 하 여 백 -

